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의안번호 : 제1693호

다. 제출일자 : 2020. 7. 13.

라. 회부일자 : 2020. 7. 14.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안 제2조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17. ~ 2020. 7. 24.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 유모차는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고,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권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2조제5호의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순화대상 언어로 기 선정된 바 있어 이견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¹⁾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등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음
- 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였고, 동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참고 :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그 결과 869개 자치법규 중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²⁾는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³⁾ 하였음

■ 차별적 용어 정비(안 제2조)

- 현행 조례 제2조제5호⁴⁾에서는 보도를 연석선, 안전표지 등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기하여 유모차 등을 포함하는 보행자의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요청' 인권담당관(2020. 4. 6.)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위 조문 중 ‘유모차’라는 단어를 ‘유아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모차에는 ‘母’자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평등육아에 위배되는 개념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육아의 주체는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포함하는 것인 만큼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는 것은 평등육아의 실현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평등육아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용어를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 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⁵⁾에서는 유모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